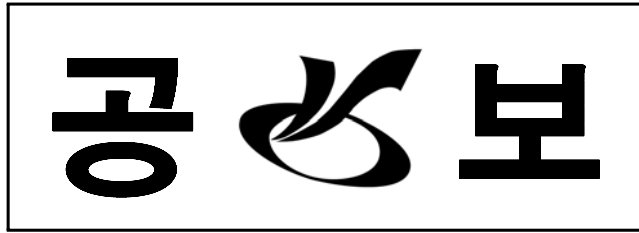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12호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105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입안(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1064호 인천광역시서구 서곶·능내공원 내 축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7 - 1059 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입안(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 환경성 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한계획

가. 입안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서구 석남동 452-22번지 일원		1,335.8			제1종일반 주거지역

나. 입안사유

- 강남시장 주차난 해소 및 이용 고객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2.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사항

가. 사 업 명 :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공사

나. 위 치 : 인천 서구 석남동 452-22번지일원

다. 사업내용 : 주차장(총면적 1,335.8㎡)

라. 설명회 및 일시 : 설명회 생략(공람으로 대체)

마.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관한 관계도서 : 게재생략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560-4762)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560-4432)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주민센터 (☎560-4607)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관계도서와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지역경제과, 석남1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7 - 1064 호

인천광역시서구서곶·능내공원내 축구장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서곶·능내공원내 축구장 사용료
징수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서곶·능내공원내 축구장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징수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되며 사용료 징수를 통한 무분별한 이용자들의 사용 제한 조치로 운동장 및 해당 시설물의 내구 연한 증가는 물론 징수된 사용료를 운동 시설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 법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능내공원내 축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자치 법규에는 필요한 조항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되 타 시도의 징수 사례등을 고려, 가급적 저가의 사용료 징수로 구민들의 부담 경감 및 운동장의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으로 징수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녹지경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80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자 치 법 규 제 정 (안) 요 약 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능내공원내 축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안)
제 정 이 유	○ 서곶근린공원·능내근린공원내 축구장은 2002년 월드컵 개최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축구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4년도와 2006년도에 축구장을 기 조성 하였으나 그동안 사용신청 폭주와 특정단체 독점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인 바, 사용료를 징수하여 축구장의 청결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내구 연한을 증가시켜 효율적으로 운동장을 관리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주 요 내 용	○ 총 10개 조항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용어의 정의 - 제4조 : 공원 및 녹지 시설의 이용 - 제5조 : 공원 및 녹지시설의 사용허가 - 제6조 : 사용료에 대한 사항 - 제7조 : 공원 및 녹지의 사용료 - 제8조 : 사용료의 감면 - 제9조 : 허가 취소 등 - 제10조 :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 명령 - 제11조 : 원상회복 등 - 제12조 : 휴장일 - 제13조 : 관리주체 - 제14조 : 사용시간
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해 당 없 음”
관계법령 발체	“해 당 없 음 ”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 산 수 반 사 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능내공원내 축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36조 규정에 의거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서곶·능내공원내 축구장 사용료 징수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공원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등의 징수, 원상회복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능내공원내 조성된 축구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자(단체등)에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시설이라 함은 서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원내 시설(조경수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등을 말한다.
2.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도시내 녹지로 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시설이라 함은 서구에서 설치·관리하는 녹지내 시설(조경수 포함)과 부수되는 설비, 비품등을 말한다.

제4조(공원 및 녹지시설의 이용)

-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구민과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및 관리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구청장이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 ② 녹지 및 녹지내 시설물은 모든 구민과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및 관리한다.

제5조(공원 및 녹지시설의 사용 허가)

- ① 공원 및 녹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다만 관외거주자(단체 및 개인 포함)가 공익 목적등의 행사 장소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일을 정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우리구와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에 대한 사항)

- ② 서곶·능내공원내 축구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경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공원 및 녹지 시설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단체 및 개인 포함)가 재사용 신청시

제7조(공원 및 녹지의 사용료)

- ①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신청시(허가) 납부하되, 납부가 어려울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구와 협의한 후 조정할 수 있다.
-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천이나 천재지변 또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 인천시 · 우리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각종 경기 대회
 2. 관내 유치원(연합유치원) · 초 · 중 · 고 운동회(연 2회 면제)
 3. 관내 초 · 중 · 고 축구부 및 구 지원 유소년(월 2회 면제)
 4. 관내 장애인 및 노인회 단체, 관내 국가 유공자 단체가 이용할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정당한 사항 위반시
2. 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기타 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 명령)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및 동반한 동물에 사용할 위생봉투 미 구비자 및 배설물을 공원내 방치한 자
4. 공원 및 녹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1조(원상회복 등) 구청장은 공원 및 녹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아래와같은 항에 해당될 경우 구청장은 원상 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 이행시에는 훼손된 시설물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 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공원 및 녹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휴장일) 서곶 · 능내공원내 축구장의 휴장일은 원칙적으로 월요일로 정하되 휴장일 변경등 사유 발생시에는 구와 위탁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토록 한다.

제13조(관리주체) 서곶·농내공원내 축구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구에서 관리 하여야 하나 별도 위탁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 관리 한다.

제14조(사용시간) 축구장에 대한 1일 사용 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재조정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시설물(축구장, 운동장 등)이 아닌 일반적인 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외 하도록한다.

구 분	시 간 별	비 고
동 계(11월~2월)	08:00 ~ 17:00	일출·몰을 고려함
하 계(3월~10월)	08:00 ~ 19:00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명	사용 구분	체육 경기		체육경기외(행사 등)		비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서곶근린공원 축 구 장	2시간	40,000	70,000	-	-	
	4시간	80,000	140,000	100,000	150,000	
	1일	160,000	280,000	200,000	300,000	
능내근린공원 축 구 장	2시간	20,000	30,000	-	-	
	4시간	40,000	60,000	50,000	80,000	
	1일	80,000	120,000	100,000	150,000	

※ 별표 1에 의한 사용 시간은 오전과 오후의 구분 있음
장소 및 인원수에 따라 이용 공간 조정이 있을 수 있음